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20241
----------	-------

제안연월일 : 2026. 7.

제안자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건명	의안번호	대표 발의자	발의일	회의정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 률안	2216942	김현의원	2026. 2. 23.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4.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2216987	김현의원	2026. 2. 24.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2026.4.9.)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 회부 -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2026.4.30.)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나.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

위원회(2026. 4. 30.)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2026. 5. 7.)는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의결한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과학기술원자력우주항공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한도를 상향하고, 범죄혐의가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비의 투명하고 적법한 사용을 유도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 및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선정 평가 기준에 혁신성을 명시하는 한편, 성실한 연구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제재 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기술료 사용 및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 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제6호 신설).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기준에 기존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외에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을 명시함(안 제10조제2항제1호).

다. 기술료 사용 용도에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를 법률에 명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5항제3호 및 제6항 신설).

라. 부정행위 등에 대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한도를 현행 10년 이내에서 20년 이내로 상향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한도를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배 이내에서 30배 이내로 대폭 상향함(안 제32조제1항).

마. 제재처분 사유 중 하나인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로 합리적으로 변경함(안 제32조제1항제1호).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

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연구재단 등 전문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4호,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의2 신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9조제4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제10조제2항제1호 중 “창의성 및”을 “창의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 및”으로 한다.

제18조제5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34조제2항에”를 “제34조제2항 및 제36조의2에”로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0년”을 “20년”으로, “5배의”를 “30배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을 “수행과정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으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u>제34조제2항</u> 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4. ----- ----- ----- ----- ----- <u>제34조제2항</u> <u>및 제36조의2</u> 에----- ----- -----.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④ ----- ----- ----- -----.

할 수 있다.

1. ~ 5.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과정 또는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그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경우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창의

수행 계획의 충실성	<u>성, 연구개발 목표의 혁신성</u> 및-----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 한다.	⑤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 기술이전 · 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 · 등록 · 유지</u>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u><신 설></u>	<u>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료 사용 실태 분석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용도별 사용 결과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u>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 ----- -----

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
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
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
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
정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
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
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
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
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
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
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
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 6. (생략)

② ~ ⑥ (생략)

-----제34조제2항 및 제3
6조의2에-----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
처분) ① -----

-----20년-----

-----30
배의-----
-----.

1. -----
-----수행과정
에서 성실 수행 의무를 중대
하게 위반한-----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36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	--